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2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3월 13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3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세정과장)

가. 제안이유

- 소관부서별로 구분되어 있는 수수료 규정을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여건이 변하여도 수수료의 규정 관리에 지속성을 유지하고 개별법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수료 구분 명칭 변경(안 [별표 1])
- 낚시업, 양식업 관련 허가 등의 수수료 규정 신설 및 통합 정비
(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욱)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3. 14.)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4. 2. 29.
- 회부일자 : 2024. 3. 13.
- 상정일자: 2024. 3. 14.

2. 제안이유

- 소관부서별로 구분되어 있는 수수료 규정을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여건이 변하여도 수수료의 규정 관리에 지속성을 유지하고 개별법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수료 구분 명칭 변경(안 [별표 1])
- 낚시업, 양식업 관련 허가 등의 수수료 규정 신설 및 통합 정비
(안 [별표 1])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¹⁾에서 지자체의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구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별표 1]에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신설·정비하였고, 업무 분야별로 새로 구분하여 관리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1)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기존) 소관 부서별로 구분 → (변경) 업무 분야별로 구분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9조에 따른 낙시터업 관련 수수료 신설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수수료 삭제, 「양식산업발전법」²⁾에 따라
수수료 통합 신설·정비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체계를 업무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편 사항에 대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양식산업발전법: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해수·내수)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제정한 법

[붙임 2]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2
----------	-----

제출년월일 : 2024. 2. 2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소관부서별로 구분된 수수료 규정을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제반 여건이 변하여도 수수료의 규정관리에 지속성을 유지하고
- 나. 개별법에 따른 수수료 징구 근거를 마련하여 수수료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수료 구분의 소관부서 명칭을 업무분야 명칭으로 변경
- 나.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49조에 근거, 낙시업 허가등록 등의 수수료 규정 신설
- 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등의 사항이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근거, 양식업으로 통합관리되므로 「양식산업발전법」 제74조에 따른 양식업 관련 허가 등 수수료규정 신설 및 「내수면어업법」 관련 수수료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12. 11. ~ 2024. 01. 0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제1항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1. 토지·부동산 분야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년도별)	8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	1건	3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1,500원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1건	7,000원	
2. 세정·공유재산 분야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1건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	1건	3,000원	
3. 관광·문화·체육 분야			
○ 공연장 등록	1건	10,000원	
○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2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5,000원	
○ 유통관련업 신고(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5,000원	
○ 영화상영권 등록신청	1건	20,000원	
○ 영화상영권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종합)	1건	6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종합)	1건	3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일반)	1건	5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일반)	1건	15,000원	
○ 유원시설업 신고 수수료(종합, 일반제외)	1건	30,000원	
○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종합, 일반제외)	1건	15,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	20,000원	
○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 수수료	1건	5,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1건	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등록	1건	10,000원	
4. 경제 분야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2,000원	
5. 환경 분야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청	1건	5,000원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1건,	5,000원	
6. 건설·안전 분야			
○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7. 도시·주택 분야			
○ 차고지 설치확인	1건	6,000원	
8. 보건·위생 분야			
○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3항 관련)	1건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2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4항 관련)	1건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40,000원	
○ 치과기공소 등록 및 변경 수수료	1건	10,000원	
○ 안경업소 개설 및 변경(양도양수) 수수료	1건	10,000원	
9. 농·수·축산 분야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	1건	10,000원	
○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1건	5,000원	
○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	1건	5,000원	
○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5,000원	
○ 양식업 허가 신청	1건	4,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 양식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1건	1,000원	
○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원	
○ 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	1건	1,500원	
○ 양식업 폐업신고	1건	800원	
○ 시험양식업 신청	1건	2,000원	
○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1건	3,000원	
○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1건	3,000원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 비료수입업 등록	1건	20,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h3 style="margin: 0;">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h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10%;">기 준</th> <th style="width: 15%;">수수료액</th> <th style="width: 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1. 종합민원과 소관</td> </tr> <tr> <td>○ 개별공시지가 확인서</td> <td>1필지(년도별)</td> <td>800원</td> <td></td> </tr> <tr> <td>○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td> <td>1건</td> <td>20,000원</td> <td></td> </tr> <tr> <td>○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td> <td>1건</td> <td>30,000원</td> <td></td> </tr> <tr> <td>○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td> <td>1건</td> <td>10,000원</td> <td></td> </tr> <tr> <td>○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td> <td>1건</td> <td>800원</td> <td></td> </tr> <tr> <td>○ 토지이용계획확인서</td> <td>1필지</td> <td>1,000원 칼라</td> <td></td> </tr> <tr> <td>○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td> <td>1건</td> <td>1,500원 7,000원</td> <td></td> </tr> <tr> <td colspan="4">2. 재무과 소관</td> </tr> <tr> <td>○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td> <td>1건</td> <td>800원</td> <td></td> </tr> <tr> <td>○ 개별주택가격 확인서</td> <td>1건</td> <td>800원</td> <td></td> </tr> <tr> <td>○ 공동주택가격 확인서</td> <td>1건</td> <td>800원</td> <td></td> </tr> <tr> <td>○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td> <td>1건</td> <td>5,000원</td> <td></td> </tr> <tr> <td>○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td> <td>1건</td> <td>3,000원</td> <td></td> </tr> <tr> <td colspan="4">3. 문화관광과 소관</td> </tr> <tr> <td>○ 공연장 등록</td> <td>1건</td> <td>10,000원</td> <td></td> </tr> <tr> <td>○ 공연장 변경등록</td> <td>1건</td> <td>5,000원</td> <td></td> </tr> <tr> <td>○ 유통관련업 등록(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td> <td>1건</td> <td>20,000원</td> <td></td> </tr> <tr> <td>○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td> <td>1건</td> <td>5,000원</td> <td></td> </tr> <tr> <td>○ 유통관련업 신고(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td> <td>1건</td> <td>20,000원</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1. 종합민원과 소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년도별)	8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	1건	3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1건	1,500원 7,000원		2. 재무과 소관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1건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	1건	3,000원		3. 문화관광과 소관				○ 공연장 등록	1건	10,000원		○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2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5,000원		○ 유통관련업 신고(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20,000원		<h3 style="margin: 0;">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h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10%;">기 준</th> <th style="width: 15%;">수수료액</th> <th style="width: 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1. 토지·부동산 분야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td> </tr> <tr> <td colspan="4">2. 세정·공유재산 분야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td> </tr> <tr> <td colspan="4">3. 관광·문화·체육 분야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1. 토지·부동산 분야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				2. 세정·공유재산 분야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				3. 관광·문화·체육 분야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1. 종합민원과 소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년도별)	8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	1건	3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1건	1,500원 7,000원																																																																																																			
2. 재무과 소관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1건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	1건	3,000원																																																																																																			
3. 문화관광과 소관																																																																																																					
○ 공연장 등록	1건	10,000원																																																																																																			
○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2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5,000원																																																																																																			
○ 유통관련업 신고(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1. 토지·부동산 분야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																																																																																																					
2. 세정·공유재산 분야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																																																																																																					
3. 관광·문화·체육 분야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5,000원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			
○ 영화상영권 등록신청	1건	20,000원					
○ 영화상영권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종합)	1건	6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종합)	1건	3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일반)	1건	5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일반)	1건	15,000원					
○ 유원시설업 신고 수수료(종합, 일반제외)	1건	30,000원					
○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종합, 일반제외)	1건	15,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	20,000원					
○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 수수료	1건	5,000원					
<변경>				○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1건	30,000원	
<변경>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등록	1건	10,000원	
4. 경제체육과 소관				4. 경제 분야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1건	30,000원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2,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1건	30,000원		<삭제>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등록	1건	10,000원		<삭제>			
5. 환경위생과 소관				5. 환경 분야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0원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	1건	5,000원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1건	5,000원					
6. 안전건설과 소관				6. 건설·안전 분야			
○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현행과 같음)			
7. 도시주택과 소관				7. 도시·주택 분야			
○ 차고지 설치확인	1건	6,000원		(현행과 같음)			
8. 보건사업과 소관				8. 보건·위생 분야			
○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3항 관련)	1건	40,000원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2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4항 관련)	1건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40,000원					
○ 치과기공소 등록 및 변경 수수료	1건	10,000원					
○ 안경업소 개설 및 변경(양도양수) 수수료	1건	10,000원					
9. 농축산과 소관				9. 농·수·축산 분야			
○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1,000원		<삭제>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 정치망업) (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	1건	9,000원		<삭제>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	1건	7,500원		<삭제>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내수면어업법 제9조 관련)	1건	5,000원		<삭제>			
○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관련)	1건	1,000원		<삭제>			
○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관련)	1건	5,000원		<삭제>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현행과 같음)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	1건	10,000원		(현행과 같음)			
<신설>				○ <u>낙시터업 허가·등록 신청</u>	1건	5,000원	
<신설>				○ <u>낙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u>	1건	5,000원	
<신설>				○ <u>낙시터업 지위승계 신고</u>	1건	5,000원	
<신설>				○ <u>양식업 허가 신청</u>	1건	4,000원	
<신설>				○ <u>양식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u>	1건	1,000원	
<신설>				○ <u>양식업 변경허가 신청</u>	1건	1,500원	
<신설>				○ <u>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u>	1건	1,500원	
<신설>				○ <u>양식업 폐업신고</u>	1건	800원	
<신설>				○ <u>시험양식업 신청</u>	1건	2,000원	
<신설>				○ <u>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u>	1건	3,000원	
<신설>				○ <u>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u>	1건	3,000원	
<변경>				○ <u>비료생산업 등록</u>	1건	30,000원	
<변경>				○ <u>비료수입업 등록</u>	1건	20,000원	
10. 기술지원과 소관				<삭제>			
○ <u>비료생산업 등록</u>	1건	30,000원		<삭제>			
○ <u>비료수입업 등록</u>	1건	20,000원		<삭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6조 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 제3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는 자
4. 제25조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5. 제44조 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74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지정·승인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을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군·구의 조례(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세정과장 정유진
연락처	(033) 330 - 2282